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전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32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12.

발의자 : 전해철 · 소병훈 · 윤후덕

김상희 · 서영교 · 김종대

김영춘 · 전혜숙 · 김현미

조정식 · 이철희 · 남인순

유성엽 · 추혜선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,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.

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폐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부폐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

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).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.

마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

다만,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.

다.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말한다. <<u>단서 신설</u>></p> <p>가. ~ 라.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“공직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<u>단서 신설</u>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-----.</p> <p>-----. 다만,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.</p> <p>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마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.</p> <p>-----. 다만, 다목의 경우에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</p>

가. · 나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~ 8. (생 략)	<u>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.</u> 가. · 나. (현행과 같음) <u>다.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</u> <u>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</u> <u>교법인의 임직원</u> 4. ~ 8. (현행과 같음)
--	--